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아동청소년과)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04
----------	-----

제출년월일 : 2023. 3.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 5. 31.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 규 모 : 대지 257㎡, 연면적 477.80㎡ (지하1층/지상3층)

나. 위탁기간 : 2023. 6. 1. ~ 2026. 5. 31.(3년)

다.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

라. 수탁기관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마. 위탁사무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청소년 문화공간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 청소년의 자치·자율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그 밖에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바.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적정
- 사. 선정방법 :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아. 기존 위탁현황

시설명	시설현황	위탁기간	종사자수	수탁기관	소요예산 (‘23년 기준)
장위청소년 문화누림센터	- 위치: 성북구 장월로896 - 규모: 477.80m ² (지하1층/지상3층)	2020.6.1. ~ 2023.5.31.	4명	(사)한국청소년 한마음연맹 (센터장 : 김상찬)	379,271천원 (구비)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